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	공보담당관

(2017. 9. 2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유 준 상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15일(금)
- 제 출 자 : 유호렬 의원 외 10명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9월 18일(월)

4. 관계법규

- 없음

5. 제정이유

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함.

6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상징물의 종류, 구기 및 상징물의 관리 등(안 제3조 ~ 제5조)
-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책무
(안 제6조 ~ 제10조)

○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 회의, 간사 및 수당 등(안 제11조 ~ 제14조)

○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(안 제15조 ~ 제16조)

7.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의견으로는

“상징물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징하는 휘장, 브랜드 슬로건, 동물, 식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대내·외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명확한 업무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특히, 조례 제정에 앞서 2차례의 용역 및 주민 설문조사와 10차례의 상징물 개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폭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

그 결과 휘장은 마포가 지닌 문화, 창의, 예술, 미디어, 첨단산업 등 다양한 특징들을 영문 워드마크 형태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이를 하나의 선이 연결된 모습으로 디자인하며 마포의 다채로움이 공존하고 도시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하고,

브랜드 슬로건은 문화, 예술, 산업, 미디어 등 각 분야에 다양한 멋이 공존하는 마포에서 누구나 나만의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의미로 ‘마이 마포’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운율과 리듬감을 살리고 어절 사이에 다양한 단어조합으로 확장이 가능한 가변형 디자인을 구현함.

본 조례안은 국내 및 세계관광도시 마포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새롭게 선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우리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됨.